

# 2026년도 AI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사업 기술지원 기업 모집 통합광고

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AI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사업의 지원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일

산업통상부장관, 울산광역시장, 울산테크노파크원장

## 1. 지원개요

- (사업명) AI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사업
- (사업내용) 첨단 복합소재(CFRP, GFRP 등)를 활용한 대형 선박기자재 및 첨단 부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
- (지원규모) 총 4억원 이내, 품목당 최대 8천만원  
※ 기업당 복수 신청 가능하며, 지원 품목 및 지원내용이 상이한 경우 중복 신청 가능함
-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 ~ 2026. 11. 13

## 2. 지원대상(신청기업)

- (신청자격 요건)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구분		신청자격 요건
필수	1	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•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※ 본사, 지사, 공장, 기업부설연구소 등 사업장 소재지 무관
우대	2	• 복합소재를 활용한 선박 기자재 부품 제조기업 및 관련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• 복합소재 활용 기업 또는 선박 기자재 제조기업

○ (신청제외 대상)

※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※	
○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	
○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
○ 사업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	
○ 기업의 부도 또는 휴·폐업 상태인 경우	
○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	
○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	
○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	
○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	
○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잠식	
○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	

### 3. 세부 지원내용

○ (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) 시제품 제작

지원분야	프로그램	지원항목	지원규모
기술지원	시제품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복합소재를 활용한 시제품 설계, 제작지원, 기존 제품 기능 추가 및 성능개선 지원</li> <li>○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 지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품목당 최대 8천만원</li> </ul>

### 4. 평가방법 및 기준

○ (평가방법) 신청 및 접수 → 사전검토(필요 시 현장실사) → 선정평가위원회 → 협약체결

○ (평가항목) 발표평가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인 품목(접수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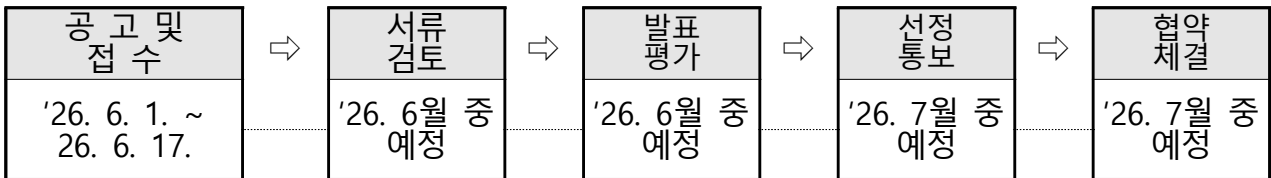
구 분	위원구성	평가항목
발표평가	○ 관련분야 전문가 5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계획의 필요성 (20)</li> <li>- 사업계획의 적정성(성과지표 등) (20)</li> <li>- 지원내용 등의 구체성 (20)</li> <li>- 기대효과(지원제품의 사업화 등) (20)</li> <li>-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(20)</li> </ul>

## ○ (선정기준)

구 분	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	선정기준
발표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가위원별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으로 계산함</li> <li>최고 또는 최저 점수 중 동일한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,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가 종합평점이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품목 순으로 선정 (예산 한도 내)</li> <li>※ 단, 선정기업 포기시 평균 70점 이상 기업중 예산한도 내에서 차순위 고득점 기업이 선정될 수 있음</li> </ul>

## 5. 신청 기간 및 절차

○ (신청기간) 2026년 6월 1일(월) ~ 2026년 6월 17일(수)



\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6. 신청 방법

○ (신청방법)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\*을 통한 신청접수

- <https://platform.utp.or.kr/>

※ (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상단 '기업 매뉴얼' 참조)

- 공고명 : AI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사업 기술지원

## 7. 제출서류

### < 제출서류 목록 >

구분	제출서류	서식 여부
1	참여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붙임1
2	신청기업 자가진단표	붙임2
3	개인(기업)정보 이용 및 활용동의서	붙임3
4	제출서류 목록표	붙임4
5	사업자등록증	
6	'23~'25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	
7	'23~'25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	
8	납세증명서(국세 및 지방세)	
9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시점)	

\*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## 8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되거나,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받을 수 있음
-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-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금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서 제외되며, 참여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
-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,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및 사업
-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,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
-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59조,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

## 9. 이의신청

- 이의신청의 범위
  - (이의신청 가능 사항)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, 과제 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,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
    - \*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
  - (이의신청 불가 사항) 선정결과 통보, 평가위원 선정, 사업비 결정, 평가규정 및 절차, 평가방식(발표평가) 등에 이의가 있는 때
- 이의신청 방법(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)
  - (신청기한)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\* 이내
    - \* 5일 :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

- (제출서류) [붙임5. 이의신청서] 작성 후 공문과 함께 본 공고문 하단 문의처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
- (작성방법) 신청기업(기관)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, 통보일, 평가결과,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
- (유의사항)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,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

**10. 관련법규**(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)

- (지원근거)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
- (관련규정)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,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,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

**11. 문의처**

구분	담당자	소속	연락처	이메일
사업담당자	류연주	기업지원단	052-219-8640	ju2104@utp.or.kr